

의안번호	제2973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7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7. 4.
제 출 자: 고성군수

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5. 7. 4.

1. 개정이유

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
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,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
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할 수
있도록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(안 제2조제1항, 제6항)
- 나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축소(30명→15명)
(안 제2조제2항)
- 다.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삭제
(안 제2조제5항, 제8조)
- 라. 비상설 위원회 회의 운영 방법 변경(안 제6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4378(2025. 4. 11.)호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☐ 해당조항: 제2조(위원회 구성)제4항 ⇒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☐ 해당조항: 제2조(위원회 구성) 제4항 ⇒ ‘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	☐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.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706호
 가) 예고기간: 2025. 4. 10. ~ 2025. 4. 30.(20일간)
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구성·운영한다”를 “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고성군수 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	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-- 15명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<삭제>
<신설>	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필요하

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	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	
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	
3.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촉 해제)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	<삭제>
1.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	
2.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	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	
4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	

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이 형 호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제12조의2(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중앙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민관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